

국제전기통신규칙(ITR)

번역 : TTA

서문

- 1 본 규칙의 규정은 자국의 전기통신을 규제하는 각국의 주권을 충분히 인지하며, 세계적인 전기통신 설비의 조화로운 발전과 동시에 전기통신 서비스의 발전과 최상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협약을 보충한다.

제 1 조

규칙의 목적 및 범위

- 2 1.1 a) 본 규칙은 일반대중에게 제공되는 국제전기통신 서비스와 운용, 그리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전기통신 전송수단 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다. 또한 본 규칙은 주관청*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한다.
- 3 b) 본 규칙은 제9조의 특별협정을 인정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지한다.
- 4 1.2 본 규칙에서 '일반대중(the public)'은 정부기관 및 법인을 포함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사용된다.
- 5 1.3 본 규칙은 전기통신 설비의 세계적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설비의 조화로운 개발과 효율적 운용 및 일반대중의 국제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이용성·가용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 또는 공인된 사적운용기관 (이하 모든 '주관청'에 적용)

- 6 1.4 본 규칙에 참조되는 CCITT 권고(Recommendations) 및 지시서(Instructions)는 본 규칙과 동등한 법적지위가 부여되는 것으로 인지되어서는 아니된다.
- 7 1.5 본 규칙의 틀내에서,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 및 운용은 관계하는 주관청간의 상호협정을 따른다.
- 8 1.6 본 규칙의 원칙을 이행함에 있어, 주관청은 관련된 CCITT 권고(동 권고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또는 파생되는 지시서를 포함)를 최대한 준수하여야 한다.
- 9 1.7 a) 본 규칙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자국의 영토내에서 운영 및 제공하는 주관청 및 사적운용기관이 그 회원국에 의하여 허가된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 권리를 자국법에 따라 또는 회원국이 그렇게 하는 것을 결정한 경우에 승인한다.
- 10 b) 적절한 경우, 관계된 회원국은 상기의 서비스 제공업자가 관련 CCITT 권고의 적용을 장려한다.
- 11 c)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규칙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해석을 위해서는 결의2 참조)
- 12 1.8 전파규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본 규칙은 사용되는 전송 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2 조 정의

- 13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이하의 정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와 정의는 다른 목적으로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 14 2.1 전기통신 : 유선, 무선, 광 또는 다른 전자기방식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건, 영상과 음성 또는 정보의 모든 전송, 송신 또는 수신
- 15 2.2 국제전기통신 서비스 : 자국내 또는 타국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소 또는 국의 전기통신 능력을 제공하는 것
- 16 2.3 관용통신: 다음에 명시된 어느 하나의 당국에서 발하는 전기통신으로, 국가원수, 정부의 수반 또는 정부의 일원인자, 육군해군공군의 최고사령관, 외교관 또는 영사,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국제연합의 주요 조직의 장,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관용전보에 대한 답신
- 17 2.4 업무용 전기통신
 다음 상호간에 교환되고 국제공중 전기통신에 관계되는 전기통신:
 - 주관청
 - 공인 운용기관(ROA)
 - 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국의 국장, 전파규칙위원회(RRB) 위원, 연합의 소재지 이외에서 공적인 문제로 활동하는 자를 포함하여 연합의 타 대표 또는 승인된 임원
- 18 2.5 특권전기통신
- 19 2.5.1 관리이사회 회원국의 대표간, 대표단의 구성원, ITU 총회 및 회의에 참여하는 연합의 상설조직 상급직원과 승인된 동료와 (통신 상대방으로서의) 그들의 주관청 또는 공인된 사적 운용기관 또는 ITU간에 ITU 관리이사회, 총회, 회의에 의해 논의되는 사안 또는 일반대중의 국제 전기통신과 관련 되는 사안 논의를 위하여 이하의 기간에 교환되는 전기통신:

- ITU 관리이사회 회의기간,
 - ITU의 총회 및 회의
- 20 2.5.2 ITU 관리이사회, 총회 및 회의 기간에 관리이사회의 회원국 대표, 대표단의 구성원, ITU 총회 및 회의에 참여하는 상설 조직의 상급직원, ITU 총회 및 회의를 지원하는 연합의 사무국 직원이 그들의 거주국과 통신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전기통신.
- 21 2.6 국제경과선로: 단말교환기 또는 단말국간의 전기통신 트래픽을 위해 사용되는 상이한 국가에 위치한 기술 설비 및 장치로서 국제 전기통신
- 22 2.7 관계: 두개의 단말 국가간의 트래픽 교환으로, 양 주관청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항상 특정 서비스로 간주 :
- 23 a) 직통회선(직통 관계), 또는 제3국의 중계점 경유 (비직통 관계)의 특정 서비스에서의 트래픽 교환을 위한 수단과
- 24 b) 일반적 정산 처리
- 25 2.8 협정요율: 국제정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관계에 주어진 주관청간의 합의된 요율
- 26 2.9 징수요금: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관청이 정하고 징수하는 요금
- 27 2.10 지시서: 전기통신 트래픽을 다루는 실재 운용절차(예, 수락, 전송, 정산)를 다루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CCITT 권고에서 추출되는 규정의 집합

제 3 조 국제망

- 28 3.1 회원국은 주관청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망의 개설, 운용, 유지보수에 협력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 29 3.2 주관청은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 요건 및 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충분한 전기통신 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0 3.3 주관청은 사용할 국제경과선로를 상호 협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협정체결이 지체되고 관계 단말 주관청간의 직통경과선로(direct route)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발신 주관청은 중계 및 착신주관청의 이익을 고려하여 발신 전기통신 트래픽의 경과선로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 31 3.4 모든 이용자는 국내 법에 따라 주관청에 의해 개설된 국제망에 접속함으로써 트래픽을 송출할 권리를 갖는다. 만족할 만한 서비스 품질은 관련 CCITT 권고에 따라 최대한 실행가능할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 4 조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

- 32 4.1 회원국은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실시를 장려하여야 하며, 동 서비스가 자국망에서 일반 대중에게 통상적으로 가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3 4.2 회원국은 주관청이 본 규칙 틀내에서 최대한 실행가능할 정도로 관련 CCITT 권고를 따르는 광범위한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협정을 통하여 협력할 것을 보장

하여야 한다.

- 34 4.3 국내법에 따라, 회원국은 주관청이 다음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실행가능할 정도로 관련 CCITT 권고에 따라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유지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5 a) 망 접속이 허용되고, 기술 설비 및 인력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단말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한 국제망에 대한 접근
- 36 b) 고객의 특정 목적으로 사용을 위하여 가용한 국제 전기통신 설비 및 서비스
- 37 c)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일반대중이 합리적으로 가용한 전기통신의 최소한의 형태
- 38 d) 적절한 경우 국제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상이한 서비스간의 상호운용 능력

제 5 조

생명안전 및 전기통신의 우선순위

- 39 5.1 조난통신 등의 생명안전 전기통신은 협약의 관련 조항에 준하고 관련 CCITT 권고를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로서 전송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다른 모든 전기통신 보다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갖는다.
- 40 5.2 UN 헌장의 특정 조문의 적용과 관련된 전기통신을 포함하는 관용통신은 협약의 관련 조에 준하고 관련 CCITT 권고를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적용가능할 경우 제39호에

언급된 다른 전기통신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 41 5.3 다른 모든 전기통신에 부여되는 우선순위와 관련된 규정은
관련 CCITT 권고에 따른다.

제 6 조 과금 및 정산

- 42 6.1 징수요금

- 43 6.1.1 국내법에 따라 모든 주관청은 고객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요금의 수준은 자국내 사안이나, 요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주관청은 동일 관계의 각각의 (호)방향에
적용되는 요금간의 과도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44 6.1.2 어떤 특정 통신에 대하여 주관청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주관청이 선택한 경과선로와 관계없이 일정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 45 6.1.3 국내 법에 따라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특정 상황을 위한 다른 협정이 없는 한
동 세금은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내에서 국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징수되어야 한다.

- 46 6.2 협정요율

- 47 6.2.1 일정관계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주
관청은 부록 1의 조항에 준하고 관련 CCITT 권고와 관련
비용추이를 고려하여 상호협정을 통하여 양자간에 적용할
협정요율을 마련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 48 6.3 화폐단위
- 49 6.3.1 양 주관청간의 특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는,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금 정산과 국제 정산 개설에서의
통화단위는
- 국제통화기금(IMF)의 화폐단위, 현재는 동 기관이
정한 특별인출권(SDR), 또는
 - 1/3.061 SDR에 상응하는 금프랑으로 한다.
- 50 6.3.2 국제 전기통신 협약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동 규정은
IMF의 통화단위와 금프랑간의 상호 수용가능한 계수에
대하여 주관청 양자가 협정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 51 6.4 정산의 개설과 정산차액의 결제
- 52 6.4.1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청은 부록 1과
2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 53 6.5 업무용 전기통신 및 특권 전기통신
- 54 6.5.1 주관청은 부록 3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단

- 55 7.1 회원국이 협약에 준하여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일부 또는
전면 중단하는 권한을 행사할 경우, 동 회원국은 그 중단과
이후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즉시 가장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6 7.2 사무총장은 즉시 가장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동 정보를 알린다.

제 8 조 정보 보급

- 57 사무총장은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수단을 통하여 주관청이 제공하는 국제 전기통신 경과선로 및 서비스에 관한 관리상, 운용상, 과금 또는 통계상의 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동 정보는 관리이사회의 결정과 권한을 갖는 총회의 결정에 기반하고 국제자문위원회 본회의의 결론 또는 결정을 고려하여 관련 협약 규정 및 동 조에 준하여 보급되어야 한다.

제 9 조 특별 협정

- 58 9.1 a) 국제전기통신 협약(나이로비,1982) 제31조에 따라, 회원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기통신 사안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되어질 수 있다. 자국법에 따라, 회원국은 주관청, 기타 기구, 또는 개인이 상대국이 허용하는 주관청, 기타 기구, 또는 개인과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동 특별협정은 회원국의 영토내 또는 영토간의 특별 국제전기통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 전기통신망, 시스템 및 서비스의 개설, 운용 및 사용과, 필요시 향후에 야기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또는 운용적 조건을 포함한다.
- 59 b) 전호의 어떠한 특별협정도 제 3국의 전기통신 설비 운용에 기술적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0 9.2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제 58호에 따라 체결되는 특별협정의 당사자가 CCITT 권고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 10 조 최종 규정

- 61 10.1 본 규칙과 부록 1, 2, 3은 1990년 7월 1일 0001시(협정 계시)에 발효한다.
- 62 10.2 제 61호에서 정한 날에, 전신규칙(제네바, 1973) 및 전화 규칙(제네바, 1973)은 국제전기통신 협약에 따라 본 국제 전기통신규칙(멜버른, 1988)으로 대체된다.
- 63 10.3 회원국이 본 규칙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정 적용에 있어 유보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 및 주관청은 동 유보를 행한 회원국 및 주관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64 10.4 연합의 회원국은 본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전기통신규칙을 승인하였음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사무총장은 회원국에게 승인통지의 수령을 즉시 회원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이하에 열거된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국의 대표는 개별 국가를 대신하여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서반어로 된 현 최종문서 1부에 서명 하였다. 동 문서는 연합에 보존하고, 사무총장은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국에 인증된 문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1988년 12월9일, 멜버른에서 작성

부록 1

정산 관련 일반규정

1. 협정요율
 - 1.1 주관청은 상호협약을 통하여 일정 관계에서 모든 적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협정요율을 수립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이때 CCITT의 권고와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원가의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관청은 협정요율을 단말국의 주관청에 지불할 단말분과 적절한 경우 중계국의 주관청에 지불할 중계분을 분리하여야 한다.
 - 1.2 대안으로서, CCITT 원가연구가 기초로 사용될 수 있는 트레픽 관계에서는 이하의 방법에 따라 정산요금이 결정될 수 있다.
 - a) 주관청은 CCITT 권고를 고려하여 자체 협정요율의 단말분과 중계분을 수립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 b) 동 협정요율은 단말분과 중계분과의 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3 일개 또는 그 이상의 주관청이 정액보상 또는 타 협약을 통하여 다른 주관청의 회선 또는 설비의 일부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경우, 상기의 1.1과 1.2와 같이 지분을 수립할 권리를 갖는다.
 - 1.4 주관청간의 합의로 일개 또는 그 이상의 경과선로가 개설된 경우 및 트레픽이 발신 주관청에 의해 경과선로가 수신주관청과의 협의 없이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수신 주관청에게 지불할 단말분은 트레픽이 합의된 주요 경과선로에서 소통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에 지불해야할 것과 같은 것으로 하고, 또 중계 비용은 발신 주관청이 부담한다. 다만, 수신처 주관청이 상이한 지분을 갖도록 사전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트래픽이 중계분에 대한 허가 또는 협정없이 중계점을 경유한 경우, 중계 주관청은 국제 정산에 포함하는 중계분의 수준을 정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1.6 주관청이 정산요금의 지분과 타 보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 세금을 타 주관청에 전가해서는 아니된다.

2. 협정의 개설(작성)

2.1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금 수납에 책임을 갖는 주관청은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한 월단위 정산서를 작성하여 관계 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2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서는 최대한 빨리 송부되어야 하며, 관계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전에 송부되어야 한다.

2.3 원칙적으로 정산은 발송 주관청에 특정한 수락의 통지가 없어도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4 그러나, 모든 주관청은 정산 수락 이후 2개월 간의 정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상호 합의된 한도 이내의 차액을 조정시 필요한 경우만으로 한다.

2.5 특별협정이 없는 관계의 경우, 채권주관청은 관계기간의 월 차계산서에 기준한 차액을 나타내는 4분기의 정산서를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작성하여 2부를 채무주관청에 송부한다. 채무주관청은 이것을 검토한 후에 그 1부를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회신한다.

2.6 중계주관청이 양단말지점간의 계산의 중계자로 되는 비직통관계에 있어서는 그 중계주관청은 발신주관청으로부터 중계 트래픽 계산 데이터를 수령한 후에,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그 데이터를 경과

선로의 순서로 자기의 다음에 위치하는 주관청에게 송부하고 관련의 발신 트래픽 계산서에 포함시킨다.

3. 계산서 차액의 결재

3.1 지불통화의 선택

3.1.1 국제전기통신계산서의 차액지불은 채무자와의 합의하에 채권자가 선정한 통화로 행한다.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제3.1.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경우에 채권자의 선택이 우선한다. 채권자가 통화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가 선정한다.

3.1.2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가치를 정한 통화 또는 일방적으로 가치를 정한 통화의 관계에 의하여, 그 등가가 결정되는 통화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통화의 사용에 대하여 채무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3.2 지불액의 결정

3.2.1 이하 각 항에 의하여 결정하는 선정통화로서 지불액은 계산서의 차액과 등가로 한다.

3.2.2 계산서의 차액이 IMF의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경우는 선정통화의 액수는 IMF의 화폐단위와 선정통화와의 관계 때문에 지불의 전일에 유효한 것 또는 IMF가 공표한 최신의 것에 의하여 결정한다.

3.2.3 그러나, IMF의 화폐단위와 선정통화와의 관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서의 차액은 제1단계로서 지불의 전일에 유효한 관계 또는 공표된 최신의 관계를 이용하여 IMF가 관계를 공표하고 있는 통화로 환산한다. 동 절차로 구해진 액수는 제2단계로서 채무국의 주요 금융지에 있어서의 공적인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외국외환시장에 설정된 지불 전일의 유효한 종가 또는 최신가를 이용하여 선정 통화의 등가액으로 환산한다.

3.2.4 계산서의 차액이 금프랑으로 표시되는 경우, 그 액수는 특별협정이 없을 때에는 본 규칙 제6.3항에 따라 IMF의 화폐단위로 환산한다. 지불액은 그 후 제3.2.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2.5 계산서의 차액이 특별협정에 따라서, IMF의 화폐단위 또는 금프랑의 어느쪽에 의해서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불도 본 특별협정에 따름과 동시에,

- a) 선정통화가 계산서의 차액의 통화와 같은 경우는 선정통화의 액수는 계산서의 차액으로 하며,
- b) 지불을 위한 선정통화가 차액을 표시하는 통화와 다른 경우는 지불액은 제 3.2.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의 차액을 선정통화에 의한 등가로 환산하여 결정한다.

3.3 차액의 지불

3.3.1 계산서 차액의 지불은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주관청이 정산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만 2개월 이내에 행해야 한다. 동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 채무주관청은 최종 최고 형식에 의한 사전통보를 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동시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가산하여 6%를 초과하지 않는 연율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다.

3.3.2 정산서에 준하는 지불은 그 계산서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해결할 때까지 늦추어서는 안된다. 후에 합의된 조정액은 그 후의 계산서에 포함시킨다.

3.3.3 채무자는 지불일에 정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선정통화의 액수를 채무자 및 채권자 쌍방이 승인하는 은행수표, 온라인 입금 또는 그 이외의 수단에 의하여 송금한다. 채권자가 송금의 수단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선택한다.

3.3.4 채무 국가에서 부과되는 지불에 따르는 비용(세금, 어음 교환의 비용, 수수료 등)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의 나라에서 부과되는 이들의 비용은 제 3국에 중계하는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시켜 채권자가 부담한다.

3.4 추가규정

3.4.1 주관청은 지불기한이 지켜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호협정에 의하여 각종 차액을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쇄하는 것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다른 주관청과의 관계에 있는 채권 또는 채무 또는
- 적당한 경우, 우편업무로부터 발생한 채무.

3.4.2 송금(은행온라인, 수표 등)이 행하여 졌을때와 채권자가 그 송금을 수령(계좌입금, 수표교환 등) 했을 때와의 사이에 제3.2항에 의하여 계산된 선정통화의 등가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그 변동으로부터 발생한 차액이 그 변동후에 계산된 채무액의 5%를 넘을 때에는 그 차액의 전액은 채무자와 채권자간 등분하여 부담, 또는 취득한다.

3.4.3 전항 각항의 1 또는 2 이상을 무효로 하든지 또는 부적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국제통화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관청은 이들 규정의 개정이 행하여질 때까지 상호협정에 의하여 계산서 차액 결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화폐 기초 또는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부록 2

해상전기통신 관련 추가 규정

1. 일반규정

제6조 및 부록 제1에 포함되는 규정은 이하의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관련의 CCITT 권고를 고려하여 해상 전기통신에도 적용한다.
2. 계산담당기관
 - 2.1 해상이동서비스 및 해상이동위성서비스에 있어서의 해상 전기통신의 요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법 및 관행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 어느쪽인가의 기관이 해상이동국의 면허인으로부터 수납한다.
 - a) 허가서를 발급한 주관청, 또는
 - b) 인정된 사기업, 또는
 - c) 상기 a) 주관청에 의하여 동 목적 때문에 지정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
 - 2.2 동 부록의 제2.1항에 있는 주관청, 인정된 사적운용기관, 또는 1 내지 2이상의 지정된 기관을 “계산담당기관”이라고 한다.
 - 2.3 제6조 및 부록 제1의 규정을 해상전기통신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부록 제1에 있어서, 주관청 용어를 “계약담당기관”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 2.4 연합은 동 부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개 또는 두개 이상의 계산담당기관을 지정하고, 선박국 국명록에 게재하기 위하여 그 명칭, 식별코드 및 주소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통지하는 명칭 및 주소의 갯수는 관련 CCITT 권고를 고려하여 제한한다.
3. 계산서의 작성

3.1 원칙적으로 계산서는 이것을 송부한 계산담당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승인의 통고가 없어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3.2 원래 모든 계산담당기관은 계산서발송일로부터 만 6개월 기간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이의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계산서 차액의 결제

4.1 모든 해상전기통신 계산서의 지불은 제4.3항에 따라서 계산서의 결제가 행하여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산발송일로부터 만 6개월 이내에 계산담당기관이 행한다.

4.2 국제해상전기통신 계산서 지불이 만 6개월을 경과하여도 행하여 지지 않는 경우는 그 이동국에게 허가서를 발급한 주관청은 청구에 근거하여 면허인으로부터 계산서 결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4.3 발송일로부터 수령일까지 1개월 이상을 경과하고 있는 경우, 수령한 계산담당기관은 발송한 계산담당 기관에 대하여 조회 및 지불이 지연될 가능성을 즉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동 지연은 계산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지불에 대해서는 만 3개월, 조회에 대해서는 만 5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는 안된다.

4.4 채무측의 계산담당기관은 계산서가 관계하는 트래픽이 발생한 날로부터 만 18개월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계산서의 결제 및 조정을 거절할 수가 있다.

부록 3

업무용 전기통신 및 특권전기통신

1. 업무용 전기통신

1.1 주관청은 무료로 업무전기통신을 제공할 수가 있다.

1.2 주관청은 국제전기통신 협약 및 동 규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호주위의 협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용 전기통신을 원칙적으로 국제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2. 특권전기통신

주관청은 무료로 특권전기통신을 제공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전기통신을 국제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3. 적용규정

업무용전기통신 및 특권전기통신에 적용되는 운용과금 및 계산의 일반원칙은 관련 CCITT 권고를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